

## <연구노트>

# 한국부동산분석학회의 연구윤리 규정 - 연구의 정직성과 공개성\*

The KREAA Guideline for Ethical Research : Research Integrity and Openness

이 용 만 (Lee, Youngman)\*

## I. 머리말

연구자는 창작물을 통해 인류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집단이다. 인문학자들은 인간의 본성이나 미적 성향을 탐구함으로써 인류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학자들은 인간의 행동이나 사회의 동작 원리를 등을 탐구함으로써 인류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를 한다. 자연과학자들은 자연의 법칙이나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을 탐구함으로써 인류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이런 탐구의 결과물은 독창적인 창작물이어야 한다. 이미 누군가가 발견하였거나 개발한 것을 동일하게 반복하여 결과물을 내놓는다면, 그 결과물은 인류 및 사회의 발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 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것, 그 동안 창조되지 않았던 것이어야 인류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연구자의 탐구 결과물인 창작물은 주로 학술지의 논문을 통해 세상에 공개된다. 그래서 논문은 독창적이어야 논문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된다.

연구윤리는 연구결과물인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래서 모든 연구자들이 따라야 하는 최소한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결과물을 보호해 주어야 연구자들이 독창적인 연구를 통해 인류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독창적인 연구결과물이 누군가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자신의 업적이 아닌 타인의 업적으로 기록된다면 연구자들은 연구를 통해 인류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동인을 잃게 된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연구윤리가 필요한 것이

다. 연구윤리는 타인의 창작물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받기 위해서라도 지켜야 하는 규범이다. 내가 타인의 창작물을 보호해 주어야 남도 나의 창작물을 보호해 주기 때문이다.

연구윤리를 규정해 놓은 ‘연구윤리 규정’은 일반적으로 연구윤리에 대한 최소한의 규범만 제시하고 있을 뿐, 연구 과정이나 연구결과물의 출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윤리 위반 사례를 모두 담고 있지는 않다. 어떤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행위를 했다고 할 때, 이 행위가 연구윤리에 위반되는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연구윤리 규정’이 담고 있는 각 조항의 취지가 무엇이냐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연구윤리 규정의 각 조항별 취지를 잘 이해하는 것은 연구윤리를 지켜 나가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연구윤리의 각 조항별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할 경우, 연구자들은 의도하지 않게 연구윤리에 접촉되는 행위를 할 수가 있다. 대부분의 연구 및 교육 기관에서는 연구결과물을 가지고 연구자의 업적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연구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업적을 쌓은 사람이라는 불명예를 얻을 수 있다. 그런 만큼 연구윤리 규정이 제시하고 있는 최소한의 규범을 잘 이해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다.

정부는 2007년에 교육부 훈령으로 “연구윤리 학보를 위한 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sup>1)</sup>. 이 지침은 각 연구 기관이나 대학, 학회 등이 연구윤리 규정을 만들 때

\* 이 연구노트는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15년 상반기 학술대회 및 하반기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수정하고 보완한 논문이다.

\*\*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ymlee@hansung.ac.kr

하나의 기준 역할을 하였다. 한국부동산분석학회도 이 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연구윤리 규정”을 2007년에 제정하였다. 당시의 정부 지침에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범위와 개념이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었는데 반해, 한국부동산분석학회의 규정에서는 연구부정행위를 연구수행과정의 연구부정행위와 연구출판과정의 연구부정행위로 구조화 시켰고, 연구부정행위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 하였으며, 중복게재와 부당한 논문편수 늘리기 등도 연구부정행위에 포함시키는 등 연구부정 행위의 범위를 확대해 놓았다.

정부는 2015년에 지침을 개정하였는데, 개정된 지침에서는 연구부정행위를 보다 구체화 하였고, 중복게재를 연구부정행위에 포함시켜 놓았다<sup>2)</sup>. 그리고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공동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를 내놓았다<sup>3)</sup>. 이 해설서에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사례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부동산분석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은 정부가 제시한 2015년 지침보다 더 구체적으로 연구부정행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수행과정이나 연구출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윤리 위반 사례를 모두 담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점에서 한국부동산분석학회에서도 연구윤리 규정의 해설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노트는 한국부동산분석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에 대한 해설서가 필요하다는 생각 하에 나온 하나의 해설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한국부동산분석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의 구조와 내용을 설명하고,

몇 가지 예시를 통해 연구윤리 규정상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구별해 보고자 한다.<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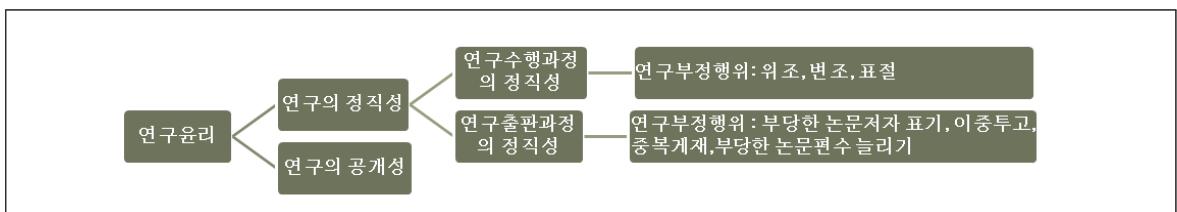
## II. 한국부동산분석학회의 연구윤리 규정 구조

한국부동산분석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보면, 연구자가 갖추어야 할 두 가지 연구윤리로 ‘연구의 정직성’과 ‘연구의 공개성’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규정 제2조). 연구의 정직성은 연구수행 및 출판 과정에서 정직해야 한다는 것으로, 흔히 ‘연구의 진실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연구의 공개성은 연구결과가 다른 연구자에 의해 재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연구의 정직성을 검증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연구의 정직성은 다시 연구수행과정의 정직성과 연구출판과정의 정직성으로 나뉜다(규정 제2조 1항). 연구수행과정의 정직성은 연구수행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고, 연구출판과정의 정직성은 연구출판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연구수행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로는 위조, 변조, 표절이 있다(규정 제2조 1항 1호). 그리고 연구출판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로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 중복게재, 이중투고, 부당한 논문편수 늘리기가 있다(규정 제2조 1항 2호).

<그림 1> 한국부동산분석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의 구조



- 1) 교육부 보도자료(2015.11.3) 참조
- 2) 교육부 보도자료(2015.11.3) 참조. 2015년 지침에서는 ‘부당한 중복게재’를 연구부정행위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부당한 중복게재’가 아닌 것은 중복게재가 허용된다.
- 3) 교육부·한국연구재단(2015) 참조
- 4)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사례들은 류동훈 외(2013), 교육부·한국연구재단(2015),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연구윤리 교육자료(2015) 등의 자료를 참조하였고, 2007년 이후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편집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연구윤리 위반 의심 사례 등을 참조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제시되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단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부동산분석학회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다.

연구수행과정이나 연구출판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기준이나 판단은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최근으로 올수록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또 최근에는 연구의 정직성과 연구의 공개성 외에 연구부적절행위도 연구의 진실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보는 경향이 있다. 연구부적절행위란 연구자의 전문성 부족이나 무지, 부주의 등으로 의도하지 않게 연구의 진실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sup>5)</sup>.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연구윤리규정에는 아직 연구부적절행위를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연구자라면 연구부적절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 III. 연구수행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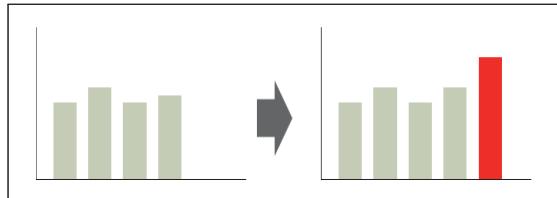
#### 1. 위조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규정 제3조)를 말한다. 단, 사회과학적 방법으로 가상의 데이터를 생성하여 분석하는 경우 위조로 보지 않는다. 이의 대표적인 예가 각종 시뮬레이션(simulation) 기법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논문에서 가상의 데이터를 생성하였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가상의 데이터를 생성하여 분석하였다면 이도 위조에 해당한다.

위조의 사례로, 회귀분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추정결과를 제시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냈으므로 위조를 한 것이다. 참고문헌에 해당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이 있는 것처럼 참고문헌을 인용하였다면 이것도 위조에 해당한다. 또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내기 위해서 데이터의 일부를 가공하여 추가하였다면, 이 또한 위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특정 지표가 최근 상승 추세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데이터에서 그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가공의 자료를

추가하여 그런 경향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었다면 명백한 위조 행위를 한 것이 된다.

<그림 2> 데이터 위조 사례



#### <위조에 해당하는 사례>

- 연구수행 과정에 수행한 적이 없는 분석결과를 가공하여 제시하는 경우
- 참고문헌에 없는 내용을 있는 것처럼 인용하는 경우
-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자료의 일부를 가공하여 추가하는 경우

####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 사회과학적 방법으로 가상의 자료를 생성하여 분석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밝힌 경우

위조란, 없는 것을 허위로 만들어 낸 것이기 때문에 실수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위조 혐의에서는 ‘저자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나 아니면 고의에 의해 일어난 일이나’라는 논란이 나오기가 어렵다.

그러나 참고문헌에 해당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인용하는 경우, 저자의 착각이나 혼동에 의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다. 또 여러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다 보면, 다른 논문에 들어가야 할 분석 결과를 실수로 엉뚱한 논문에 포함시켰을 수도 있다. 이처럼 실수나 부주의로 위조를 했다 하더라도 위조는 위조이다. 다만, 이를 처벌할 것이나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이다. 고의성이 있고 해당 위조가 논문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다면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고 해당 위조가 논문의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수나 부주의에 따른 연구부적절행위로 볼 수 있다<sup>6)</sup>.

5) 예를 들어, 회귀분석결과 추정계수의 t 통계량을 잘못 해석하여 추정계수가 유의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유의하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연구부적절행위에 속한다. 또 2차 문헌이 1차 문헌을 잘못 인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문헌을 확인하지 않고 잘못 인용된 2차 문헌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도 연구부적절행위 중의 하나이다.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연구윤리 교육자료(2015)에서는 고의성, 목적성, 무모성, 반복성이라는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연구부정행위가 고의적이며, 목적을 갖고 있으며, 단순한 실수나 부주의로 행하기 어려우며, 반복적이라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하여 처벌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2. 변조

변조란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하여 연구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sup>7)</sup>. 단, 데이터에 왜곡된 수치가 있다고 믿을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를 통계적 방법으로 제거하고 이러한 사실을 밝힐 경우에는 이를 변조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가 지나치게 높은 값이나 지나치게 낮은 값을 응답했다고 해보자. 대개는 응답자가 단위를 착각하여 응답하였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 이상치를 그대로 두고 분석을 하는 것이 오히려 결과를 왜곡할 수 있으므로, 통계적 방법으로 이상치를 제거한 후에 분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이런 사실은 논문에서 밝혀야 한다.

변조의 사례로, 부호를 바꾸면서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회귀모형식의 추정계수 부호가 '+'이기를 기대하면서 모형을 추정하였는데 추정계수가 -2.12로 나왔다고 해보자. 이를 2.12로 표기하면서 자신의 가설이 맞았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변조라는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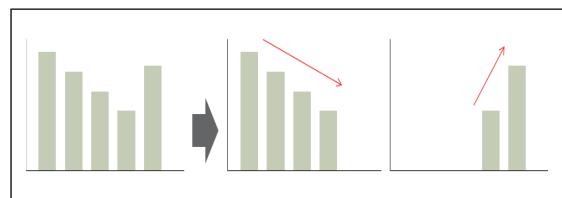
또 다른 예로, 소수점의 위치를 바꾸면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회귀모형에서 추정계수의 t-value가 0.245여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t-value를 2.45로 적으면서 추정계수가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면 이는 변조에 해당한다.

참고문헌의 내용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도록 왜곡하여 인용하는 것도 변조의 일종으로 본다. 예를 들어 xxx(2010)이 “일부 지역에서 다소 분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집중 경향이 나타났다”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고 해보자. 그런데 분화 경향을 강조하고 싶은 저자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xxx(2010)은 여러 지역에서 분화 경향이 나타난 것을 발견하였다”라고 적었다면 이는 참고문헌의 내용을 변조한 것이 된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데이터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변조의 일종이다. 예를 들어 소득계층별 주거비 지출 비중이 다음의 그림처럼 하락추세를 보이다가 고소득층에서 올라갔다고

해보자. 저자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주거비 지출 비중은 하락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데, 마지막 소득계층의 자료가 이런 주장에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지막 소득계층의 데이터를 제거하였다면, 이는 데이터를 변조한 것이다 된다. 반대로 저소득층의 데이터를 제거하면서 반대의 주장을 펴는 것도 데이터를 변조한 것이다 된다.

<그림 3> 데이터 변조의 사례



### <변조에 해당하는 사례>

- 부호 바꾸기 : -2.12 → 2.12
- 소수점 위치 바꾸기 : 0.245 → 2.45
- 참고문헌의 내용을 왜곡하여 인용하기
-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데이터의 일부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 통계적 방법으로 데이터에 있는 이상치를 제거하고, 이러한 사실을 밝히는 경우

변조는 실수나 부주의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실수로 부호를 잘못 표기하였을 수도 있고, 소수점의 위치를 잘못 표기하였을 수도 있다. 또 전문성 부족으로 참고문헌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왜곡되게 인용하였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변조는 변조이다. 다만, 이를 연구부정행위로 보고 처벌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연구부적절행위로 보고 주의를 촉구할 것이냐 여부는 앞에서 본 몇 가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고의성이 있고, 이런 실수가 자주 반복되며, 이런 변조가 논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해당 변조는 연구부정행위로 처벌되어야 한다.

7) 한국부동산분석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에서는 변조를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규정 제4조)로 정의하고 있다. 이 문구를 그대로 해석하면, 데이터 이외의 것을 변형, 삭제하는 것은 변조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규정 제4조가 의미하는 것은 연구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뿐만 아니라 연구결과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하는 것도 변조로 보아야 한다.

### 3. 표절

표절이란 국내외에서 발표된 논문 등을 통해 공개된 타인의 아이디어나 견해, 표현, 연구내용이나 결과 등을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내외 학술지나 학술대회, 세미나 등에서 발표된 논문뿐만 아니라 석·박사 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 상의 문서 등을 통해 공개된 타인의 아이디어나 견해 등도 인용 없이 사용하면 표절로 본다(규정 제5조).

표절에는 아이디어 표절과 텍스트 표절, 포괄적 인용, 데이터 표절 등이 있다. 그리고 자기표절도 표절에 해당한다.

아이디어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인용 없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학자가 ‘우리나라는 기업 오너의 연령에 따라 오피스빌딩에 대한 소유와 임차 여부가 갈릴 것이다’라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자.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증분석을 하면서, 이 아이디어가 자신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기술하였다면 표절에 해당한다. 다른 학자가 제시한 독특한 개념이나 용어 등을 인용 없이 사용하는 것도 아이디어 표절에 해당한다.

텍스트 표절은 인용 없이 타인의 문장을 가져다 쓰거나, 여기저기에서 문장들을 따 와서 이를 짜깁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문장에서 수식어나 조사 등을 조금씩 바꾸어 사용하더라도 텍스트 표절에 해당한다. 표절 여부를 검색하는 검색 프로그램에서는 대개 동일 어귀가 연속적으로 나오면 표절로 보고 있다.

포괄적 인용은 절, 항, 목 등의 제목 옆에 인용 표시를 하거나 문장 앞에서 인용 표시를 하면서 기존에 발표된 논문 등의 내용을 서술하는 것을 말한다. 포괄적 인용 그 자체는 표절이 아니나, 기존에 발표된 논문 등에 나오는 문장을 그대로 서술하는 것은 비록 인용 표시를 하더라도 표절에 해당한다. 표절의 대상에는 타인의 표현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만약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려고 하면, 양 따옴표를 사용하여 인용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고 해보자.

한국부동산분석학회의 연구윤리규정 제2조 2항에 따르면, 본 학회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한 저자는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상의 제약이나 기타 연구와 관련한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 한, 관련

데이터와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해당 연구자가 연구결과를 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은 한국부동산분석학회의 연구윤리 규정 제2조 2항에 나오는 문장이다. 연구윤리규정 제2조 2항에 나오는 문장을 통째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인용 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표절에 해당한다. 표절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통째로 사용하는 문장 앞뒤에 따옴표를 붙어야 한다(직접인용 방식).

한국부동산분석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르면, “본 학회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한 저자는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상의 제약이나 기타 연구와 관련한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 한, 관련 데이터와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해당 연구자가 연구 결과를 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한국부동산분석학회 연구윤리규정, 제2조의 2항)

이처럼 직접인용을 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이 관련된 문장의 뜻을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언어로 문장을 재해석하여 서술하고 인용 표시를 해야 한다(간접인용 방식).

한국부동산분석학회의 연구윤리규정 제2조의 2항에 따르면, 논문 저자들은 다른 연구자가 연구결과를 재현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와 결과물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다만, 지적재산권상의 제약이나 기타 연구와 관련된 제약이 있다면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데이터 표절은 타인이 조사하거나 수집하여 생성한 데이터를 인용 없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자기 논문의 표현이나 연구내용, 연구결과, 그림 등을 인용 없이 사용하는 것”도 표절에 해당된다(규정 제5조 2항). 이런 표절을 흔히 자기표절이라고 부른다. 과거에는 자기표절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였다. 연구의 확장이나 확산을 위해 자신의 연구결과를 여기저기에 발표하는 것은 연구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 과정에서 자기표절은 어쩔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최근

에는 자기표절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각 연구기관이나 학계, 교육기관 등에서 연구자에 대한 성과를 연구실적으로 평가하고 보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우려먹기를 통해 자신의 업적을 실제 이상으로 과다 인정받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기표절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표절을 연구부정행위로 보는 것은, 표절이란 기본적으로 남의 업적을 자신의 업적으로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자기표절도 연구부정행위로 보는 것은 자신의 업적을 과다하게 평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지식이나 원칙들은 인용 없이 이를 사용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또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 누구나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내용도 인용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지식이나 원칙, 추론의 결과들은 인용 없이 쓰더라도 이를 논문 저자의 업적이라고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보통은 교과서에 나올 정도의 지식이나 원칙이 여기에 속한다. 물론 교과서에 따라서는 보다 전문적인 내용을 다룰 수도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하여 이를 모두 보편적 지식이나 원칙으로 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는 사실은 경제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지식이다. 따라서 이런 내용은 누가 이야기했는지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지식이나 원칙, 추론 등’은 사람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연구 주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도 있으므로 표절을 금지하는 연구윤리의 원칙에 비추어 인용 표시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다. 만약 명확하지 않다면,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인용 표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한편 국내외 학술지 이외의 매체를 통해 공개된 자기 글이나 논문 등을 기초로 하여 논문을 작성할 경우, 자기표절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학술 세미나 등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학술지에 게재할 경우, 자기표절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학문의 발전을 위해 오히려 권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표절을 문제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규정 제5조 3항에서는 논문에 이러한 사실을 밝힐 경우 자기표절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표절에 해당하는 사례>

- 타인이 제시한 독특한 아이디어나 견해, 개념, 용어, 그림 등을 인용 없이 사용하는 것
- 타인의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인용 여부에 관계없이 표절로 봄)
- 타인의 문장을 인용 없이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
- 타인이 사용한 여러 문장들을 인용 없이 짜깁기 하여 사용하는 것
- 타인이 만든 데이터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
-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자기 논문의 표현이나 연구 내용, 연구결과 등을 인용 없이 사용하는 것

####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 따옴표로 표시하여 타인의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고 이를 인용 표시하는 경우
- 학계에서 통용되는 보편적인 지식이나 원칙들을 인용 없이 사용하는 것
- 추론을 통해 누구나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내용들을 인용 없이 사용하는 것
- 국내외 학술지 이외의 매체를 통해 공개된 자기 글이나 논문 등을 기초로 하여 논문을 작성하고 이를 논문에 밝힐 경우

## IV. 연구출판과정에서의 연구부정행위

### 1.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는 연구에 기여한 사람을 논문저자로 표기하지 않거나,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논문저자로 표기하는 행위를 말한다(규정 제6조).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 사례로, 석사학위 논문이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나 전부를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해당 원생을 저자에서 배제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학위를 받은 원생이 지도교수를 빼고 단독으로 자신의 학위 논문의 일부나 전부를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 지도교수가 대학원생의 논문 작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지도교수나 논문심사위원이 대학원생의 논문 작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 대학원생 단독보다는 논문 작성에 상당한 기여를 한 지도교수나 논문심사위원이 같이 저자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에 대한 판단은 대학원생 당사자와 지도교수가 해야 한다.

실제로 연구에 기여한 바가 없는 사람을 논문저자에 끼워 넣어주는 것도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의 한 사례

이다. 그리고 저자를 상호 교환하는 것도 부당한 논문 저자 표기에 해당한다. 자기 논문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넣어주고, 다른 사람의 논문에 자기 이름을 넣는 것이다. 연구자들이 속해 있는 기관에서는 대개 단독 논문은 100% 인정하고, 2인 공저는 70%, 3인 공저는 50% 등으로 업적을 인정하는데, 저자 상호 교환을 통해 연구업적을 부풀이기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자료를 수집하거나 자료 정리, 편집 및 오탈자 수정 등 연구에 보조적인 역할만 한 사람의 경우, 논문저자로 표기하지 않더라도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로 보지는 않는다. 여기서 판단의 문제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자료 수집이나 정리 그 자체가 논문 작성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 자료 수집 또는 정리한 것으로도 논문에 대한 기여를 인정해야 하고, 그 일을 한 사람을 논문저자에 포함시켜야 한다. 결국 이에 대한 판단은 논문을 주도하는 사람이 결정해야 하고, 해당 일이 논문 작성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 일인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논문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논문의 전개과정이나 방법론에 대한 기초를 제공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논문작성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논문을 작성할 수 없었기에 논문작성에 기여한 것이 된다. 그러나 단순 자료수집이나 정리, 오탈자 수정 등을 누구나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아니라도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의 글 정도로 논문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논문저자에는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에 해당하는 사례>

- 논문 작성에 일정한 기여를 한 사람을 논문 저자에서 제외하는 것
- 논문 작성에 일정한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논문 저자에 포함시키는 것
- 상호 논문 저자를 주고받는 것(내 논문에 다른 사람을 저자로 넣어주고, 그 사람의 논문에 나를 저자로 넣는 것)

####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 단순한 자료수집이나 정리, 오탈자 수정 등 연구에 보조적인 역할을 한 사람을 저자에 넣지 않는 것

## 2. 이중투고

이중투고는 동일 논문을 여러 학술지에 투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시에 투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차를 두고 투고를 하는 경우도 이중투고에 해당한다. 물론 한 곳에 투고를 한 후에 게재불가 판정을 받고서 다른 곳에 투고하거나, 스스로 논문투고를 철회한 후에 다른 곳에 투고하는 것은 이중투고가 아니다.

이중투고를 연구부정행위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은 학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이중투고를 연구부정행위로 보는 학회는, 이중투고가 뒤에서 이야기할 중복 게제라는 연구부정행위를 시도하는 것으로 본다. 실현될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중복게제 의도에서 이중투고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일부 학회에서는 이중투고 그 자체는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이중투고를 허용하기도 한다. 이중투고를 하더라도 중복게제를 한다는 보장이 없고, 실현되지 않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처벌을 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중투고가 중복게제라는 연구부정행위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둘러싼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학회의 학술지에서는 이중투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중투고를 허용할 경우, 다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을 투고하는 것을 금지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미 게재된 논문을 다시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은 뒤에서 볼 중복게제라는 연구부정행위를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아직은 중복게제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중복게제라는 연구부정행위로는 이런 행위를 처벌하기가 어렵다. 이 경우 이중투고로 처벌할 수 있지만, 이중투고마저 허용된 상태라면 이중투고로도 처벌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또한 이중투고를 허용할 경우, 논문 심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논문을 여러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한 후 모두 게재 평가를 받았다고 해보자. 이 경우 해당 논문의 저자는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학술지에는 논문투고 철회를 요청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학술지는 그 동안 논문심사를 하느라고 팬한 노력만 들인 셈이 된다.

이런 두 가지 이유에서 대부분의 학회에서는 이중투고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 <이중투고에 해당하는 사례>

- 하나님의 논문을 여러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동시에 투고하던 시차를 두고 투고하던 관계없음)
-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다시 투고하는 것 (이러한 사실을 밝히던 밝히지 않은 간에 관계없음)
- 학술지가 아닌 잡지 등에 게재된 논문을,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

#### <이중투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 한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고 난 뒤, 투고 철회하고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
- 한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고 난 뒤, 게재불가 판정을 받아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
- 학술지가 아닌 잡지 등에 게재된 논문을, 이러한 사실을 밝히고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

### 3. 중복게재

중복게재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동일한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규정 제8조 1항). 예를 들어 A라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B라는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중복게재가 된다.

그러나 학술대회나 세미나 등에서 발표된 논문이나 연구보고서, 석·박사 학위논문 등을 수정 보완하여 게재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면 이는 중복게재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행위는 적극적으로 권장된다.

중복게재를 연구부정행위로 보는 이유는 중복게재를 통해 연구자가 자기업적을 실제 이상으로 과다하게 부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학술대회 등에 논문을 발표하는 행위 자체가 논문 작성 과정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된 논문은 아직 미완성된 논문이고, 이를 수정 보완하여 완성한 논문이 바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구보고서나 석·박사 학위논문 등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해 연구 성과를 확산시키고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을 학술지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잡지 등에 게재를 하거나 세미나 등에서 발표하는 것(물론 해당 논문이 이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도 중복게재로 보지 않는

다. 이것 역시 연구 성과의 확산 활동으로 보기 때문이다.

대부분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는 학술대회나 세미나 등에서 발표된 논문, 잡지에 발표된 논문 등을 연구실적으로 계산하지 않거나, 연구실적으로 계산하더라도 가중치를 매우 적게 주고 있다. 즉, 중복게재를 하더라도 연구실적을 과다 평가할 우려가 없으며, 연구의 확산 및 심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중복게재를 허용하는 것이다<sup>8)</sup>.

그렇다면 잡지 등에 게재한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학술지에 투고하여 게재하는 경우, 이는 중복게재에 해당하는 것인가? 연구윤리규정 제8조 1항의 문구 그대로만 본다면, 잡지는 학술지가 아니기 때문에 중복게재가 아닌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제8조 2항에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아닌) 학술대회나 세미나 등에서 발표된 논문이라도 이러한 사실을 밝히고 학술지에 게재해야 중복게재로 보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면, 잡지 등에 게재한 논문이라도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해당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한다면 중복게재가 된다.

즉,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다면 이러한 사실을 밝히던 밝히지 않은 간에 관계없이 중복게재가 된다. 반면 학술지 이외에 게재되거나 발표한 논문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학술지에 게재하였을 때에만 중복게재가 되는 것이다.

한글로 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고 난 뒤, 영어나 다른 언어로 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도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즉, 언어의 차이만으로는 서로 다른 논문이라고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중복게재의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유사한 논문을 게재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단순하게 제목만 다르거나, 추가적인 분석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결과는 동일하다면 이는 사실상 동일 논문으로 보기 때문에 중복게재가 된다. 그러나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유사성이 높을 경우 이는 중복게재라기보다는 뒤에서 언급할 부당한 논문편수 늘리기에 해당 한다<sup>9)</sup>.

8)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는 이런 종류의 중복게재는 오히려 권장되는 중복게재로 보고 있다. 교육부 지침에서는 연구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중복게재를 ‘부당한 중복게재’라고 부르면서 부당한 중복게재만 연구부정행위로 보고 있다.

#### <중복게재에 해당하는 사례>

-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이러한 사실을 밝히던 밝히지 않은 간에 관계없음)
- 학술대회, 세미나, 잡지 등에서 발표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경우
- 연구보고서, 석·박사 학위논문 등의 일부나 전부를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경우
-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학술지의 승인 없이 잡지 등에 게재하는 경우(학술지로부터 승인을 받았더라도 잡지 등에 게재할 때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경우)
- 한글로 된 학술지 논문을 다른 언어로 바꾸어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
-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일부만 수정하여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이러한 사실을 밝히던 밝히지 않은 간에 관계없음)

####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 학술대회, 세미나, 잡지 등에서 발표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는 경우
- 연구보고서, 석·박사 학위논문 등의 일부나 전부를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는 경우
- 학술지에 게재된 녺문을 학술지의 승인을 받아 잡지 등에 게재하고 이러한 사실을 밝히는 경우

## 4. 부당한 논문편수 늘리기

부당한 논문편수 늘리기는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된 논문과 유사한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규정 제9조). 부당한 논문편수 늘리기를 연구부정행위의 하나로 규정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연구자의 연구업적이 과다하게 부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기존에 이미 출간된 논문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유사한 논문’을 양산함으로써 연구자의 연구업적을 부풀리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이때 ‘유사한 논문’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어떤 논문이 유사한 논문이고 어떤 논문이 독창적인 논문인가에 대한 판단은 각 학술지의 편집위원회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다. 한국부동산분석학회에서는 논문의 목적이나 연구방법, 연구자료, 연구범위, 연구결과, 논리전개방식 등에서 최소한 2개 이상 항목이 기존 논문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야 독창적인 논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9) 학회에 따라서는 부당한 논문편수 늘리기를 중복게재의 한 유형으로 보기도 한다. 중복게재를 이미 게재한 논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교육부의 지침에서도 중복게재 속에 부당한 논문편수 늘리기가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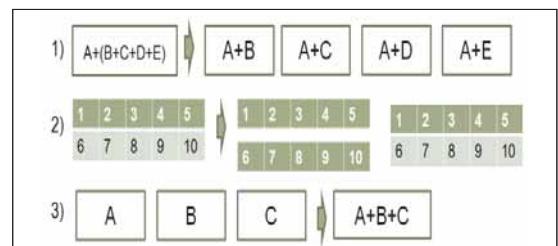
예를 들어 보자면,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시장을 분석한 논문을 게재한 후, 분석대상 지역만 바꾸어서 논문을 작성한 후 이를 투고하거나 게재하였다며 이는 부당한 논문편수 늘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역적 차이에 따른 분석결과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지역에 따라 학술적, 정책적 함의가 다르게 나타난다면 유사한 논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다른 예로, 설문조사 결과의 일부 자료를 가지고 논문을 게재하고, 또 다른 일부 자료를 가지고 비슷한 방법으로 또 다른 논문을 만들어 투고하거나 게재한다면, 이 또한 부당한 논문편수 늘리기가 된다. 그리고 기존에 게재되었던 논문들을 엮어서 하나의 논문으로 만들어 학술지에 투고하거나 게재하는 것 역시 부당한 논문편수 늘리기가 된다.

반면, 일련의 연구과정에서 후속연구의 성격으로 나온 논문은 유사한 논문이 아니고 독창적인 논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후속연구가 전체 논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으면 ‘독창적 논문’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또 자신이 그 동안 발표한 일련의 논문들을 비교 분석하는 논문(일종의 연구 서베이 논문)도 ‘유사한 논문’이 아닌 독창적 논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결국 부당한 논문편수 늘리기 의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독창성이 있는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독창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논문을 게재하거나 투고할 경우, 부당한 논문편수 늘리기라는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림 4> 부당한 논문편수 늘리기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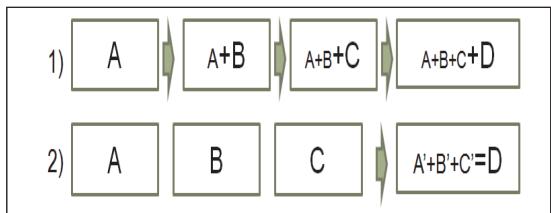


주 : 1)은 분석대상을 달리하면서 여러 편의 논문을 작성하여 투고하거나 게재하는 경우임.

2)는 데이터를 쪼개서 여러 편의 논문을 작성하여 투고하거나 게재하는 경우임.

3)은 기존의 발표된 논문들을 묶어서 하나의 논문으로 만들어 투고하거나 게재하는 경우임.

<그림 5> 부당한 논문편수 늘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 : 1)은 후속연구 성격의 논문으로, 후속연구 부분이 논문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임  
2)는 기존의 발표된 논문들을 비교·분석한 서베이 논문을 만들어 투고하거나 게재하는 경우임.

<부당한 논문편수 늘리기에 해당하는 사례>

- 분석대상만 다를 뿐, 나머지는 기존의 논문과 별반 차이가 없는 논문을 투고하거나 게재하는 것
- 데이터를 쪼개서 여러 편의 논문을 작성하여 별도로 투고하거나 게재하는 것
- 분석방법만 다를 뿐, 나머지는 기존의 논문과 별반 차이가 없는 논문을 투고하거나 게재하는 것
- 이 밖에 논문목적, 연구방법, 연구자료, 연구범위, 연구결과, 논리전개방식 등에서 최소한 2개 이상 항목에서 기존 논문과 현격한 차이가 없는 논문을 투고하거나 게재하는 것
- 이미 게재된 여러 편의 논문을 엮어서 하나의 논문으로 만든 뒤, 이를 투고하거나 게재하는 것

<부당한 논문편수 늘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 논문목적, 연구방법, 연구자료, 연구범위, 연구결과, 논리전개방식 등에서 최소한 2개 이상 항목에서 기존 논문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논문을 투고하거나 게재하는 것
- 후속연구 성격의 논문으로서 후속연구 부분이 주된 내용인 논문을 투고하거나 게재하는 것
- 이미 게재된 여러 편의 녺문을 비교·분석한 논문(연구서베이 논문)을 투고하거나 게재하는 것

의존하기 때문에 연구부정행위나 아니냐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특히 연구자의 전문성 부족이나 무지, 실수나 부주의 등으로 의도하지 않게 연구부정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이를 연구부정행위로 처벌해야 하는지도 논란끼리이다.

연구부정행위는 대개 타인의 업적을 자신의 업적으로 만들거나, 자신의 업적을 과다하게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어떤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점에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단은 연구부정행위로부터 어떤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했느냐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고의성 여부에 관계없이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면 곧바로 징계를 하는 엄격함이 유지되고 있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연구자의 무지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연구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것이다.

연구자라면 최근으로 올수록 연구윤리의 기준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의도하지 않게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연구윤리의 세부적인 조항과 예시에 대해 충분히 주의를 기우릴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1.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교육부 보도자료, 2015.11.3.
2. 교육부·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3.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연구윤리 교육 자료”, 2015
4. 류동춘·정원섭·이승희·김영훈·김영심, 「인문사회분야 연구윤리 매뉴얼」, 한국인문학총연합회·한국연구재단, 2013

## V. 맺는 말

연구윤리는 타인의 업적을 존중하고 자신의 업적을 정직하게 평가받기 위해 필요한 규범으로 연구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구자도 사람인자라 의도하지 않게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데, 이런 의도하지 않은 연구부정행위로부터 연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연구윤리가 필요한 것이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인 요소에 일부